

##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 「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7일  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### 1 사업 개요

사업목적 :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용 촉진

지원대상 : 소상공인

지원규모 : 총 6,410개사

지원내용 \*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세부사업명		지원내용
통합 신청 (메뉴판)	① 상품 개선	- (포장) 박스·스티커·설명서 등 포장 관련 디자인 제작 - (브랜드) 로고·캐릭터·배너 디자인 등 제작
	② 상세페이지 제작	- 소상공인 제품의 특징점을 반영한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
	③ 콘텐츠 제작	- 제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
	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- (온라인쇼핑몰) 단독딜 및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- (로컬상품관) 지역몰 내 상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
	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-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, 판매 전 과정 지원
	⑥ SNS 마케팅	- 소상공인 상품 컨설팅, SNS 광고 및 결과 레포트 제공
	⑦ 온라인 홍보	- 검색 포털을 활용한 검색 광고 등 상품 홍보 지원
	⑧ 물류 서비스	- 상품 보관, 포장, 배송 등 관련 물류 서비스 제공

### 2 신청자격 및 요건

지원 대상·상품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

#### <지원 제외대상>

구분	내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<붙임2> 참조
휴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대표자(소상공인)의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	○ 대표자(소상공인)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지원제외 상품	○ 해외 수입상품,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* 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

### 3 신청 및 접수

신청 기간

세부사업명		모집규모*	신청기간
통합 신청 (메뉴판)	① 상품 개선	600	'26.5.27 ~ 6.10
	② 상세페이지 제작	1,100	
	③ 콘텐츠 제작	700	
	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2,930	
	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680	
	⑥ SNS 마케팅	130	
	⑦ 온라인 홍보	130	
	⑧ 물류 서비스	140	

\* 1차 모집 소상공인 중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 방법

- (사업신청) 판판대로(www.fanfandaero.kr)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신청
- (제출서류)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상공인확인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
구분	내용	비고
① 사업자등록 증명원	·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국세청 홈택스
② 소상공인 확인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
③ 국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국세청 홈택스
④ 지방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정부24
⑤ OEM증명서	·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(해외ODM 불인정)	해당 시 제출

- \*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(업로드)하며, 온라인 사업 신청 시,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(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) 제출 불필요
- \*\* 단,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 (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)
- \*\*\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5.27일이면 유효기간이 5.27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
□ 선정 절차



- \* 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하단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- \*\*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
- \*\*\*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

<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>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- '소기업(소상공인)'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접속 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- \* 발급문의처
  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  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-6508



□ 선정평가 기준 : <붙임1>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

□ 우대사항

- 가점부여 :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고
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	해당 시 +5점
② '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진출 소상공인	
③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	
④ '23~'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체부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* 한국관광공사 주최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⑤ '25년 우수 특구(탁월우수 등급)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	
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(coop.go.kr)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	해당 시 +3점
⑦ '23~'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

- \*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

## 4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

### ☐ 메뉴판 지원사업

세부사업명	정부지원금	자부담 비율	지원한도
① 상품 개선	2,385,000원	10%	<b>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(1개사 당)</b>
② 상세페이지 제작	1,602,000원		
③ 콘텐츠 제작	2,349,000원		
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1,800,000원	없음	
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3,501,000원	10%	
⑥ SNS 마케팅	2,475,000원		
⑦ 온라인 홍보	2,475,000원		
⑧ 물류 서비스	1,980,000원		

\* 정부지원금(90%) 외에 자부담금(10%)과 부가가치세(10%)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며 사업별 자부담금은 <붙임1>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

### 메뉴판 지원(통합신청)이란?

- ⇒ '26년에는 위의 ①~⑧번의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기준 6백만원 내에서 다수의 사업을 선택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⇒ 메뉴판 지원을 받더라도 개별 신청 대상사업(플랫폼 MD상담회, TV·데이터 홈쇼핑 등)과 중복참여(지원)가 가능합니다.

## 5 유의사항 및 문의처

### ☐ 메뉴판 지원 사업 운영방법

- (사업신청) '메뉴판 사업'의 8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최대 4개까지 한 번에 신청 및 우선순위\* 설정 가능(1~4순위)
  - \* 설정한 우선순위는 변경불가
- (사업선정)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
  - \* (지원한도)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(국비)를 합산하여 최대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
- (지원제한) ①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\* 시,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, ②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' 참여 시, 조건부\*\* 중복지원 불가
  - \* 예시) '26, '27, '28년 연속참여 시, '29년부터 지원 불가('26년부터 적용)
  - \*\* '26년 '온라인 브랜드 육성사업(TOPS 프로그램)'을 통해 동일 플랫폼에서 지원받는 경우, TOPS 프로그램 2단계 선정 시 선정일 기준으로 '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' 수혜 중단(지원완료)

### ☐ 유의사항

#### <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>

- ※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,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,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  - \*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(수행기관-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)
  - \*\*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
- ※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, 2차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
-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,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\* 제출 방식 :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,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, 기타 설문조사 등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
- **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(희망리턴패키지)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,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
- 선정 이후,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,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,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.

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## <붙임1> 세부사업별 세부 지원내용

### ① 상품개선

- 세부사업명 : 상품개선
- 사업목적 : 온라인 시장 초기진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
- 지원규모 : 총 600개사
  - \* 해당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수행기관 물량이 조기 마감될 경우, 추가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신규 수행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: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(B2C) 상품
 

유형	유형별 지원대상
패키지	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대상
브랜드	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또는 무형상품 대상

  - \* 과거에 상품개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65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정부보조금(90%)		부가가치세
	자부담금(10%)		
2,650,000	2,385,000	265,000	265,000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- 지원내용
  - (진단 및 컨설팅)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,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, 개선 방향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 (대면 또는 비대면)
  - (디자인 개선) 신청한 유형(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, 유형 중 택1) 및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, 종류별 각 이미지 시안 2개를 제작하고 소상공인에게 전달 → 최종 선택한 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선

유형	디자인 범위(총 5종)	비고
패키지	아웃박스, 스티커(라벨), 테이프, 락, 상품설명서(레시피카드) 등	유형
브랜드	브랜드(로고), 캐릭터, 상품설명서(레시피카드), 배너디자인(PC용) 배너디자인(모바일용) 등	택1

- **(활용 제작물)** 디자인 개선·제작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활용 제작물 1종 지원

유형	제작물 범위	비고
패키지	아웃박스를 제외한 패키지 디자인 4종 중 선택	1종
브랜드	쇼핑백 또는 상품설명서(레시피카드) 중 선택	1종

\* 제작물 지원규모 : 5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, 제작범위 외 제작물 변경 불가

- **(A/S 지원)** 최종 디자인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 간 A/S 지원
  - \* 원본파일 제공 /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
**평가 항목**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최대 35점)	온라인판매(스마트스토어, 입점몰 등), SNS 채널 등 보유 및 콘텐츠 활용 적합성	35~31	30~26	25~21	20~16	15
상품 경쟁력 (최대 30점)	흥미 유발 요소, 심의 적합, 트렌드 등 상품에 대한 디자인 구현 적합성, 경쟁력	30~27	26~23	22~19	18~15	14
사업 참여 역량 (최대 20점)	상품 기술 현황 완결성,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~18	17~15	14~12	11~9	8
발전 가능성 (최대 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~13	12~10	9~7	6~4	3
가점 (최대 5점)	우대사항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\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**② 상세페이지 제작**

- 세부사업명** : 상세페이지 제작
- 사업목적** : 소상공인 대상 상품 사진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과 자생력 강화
- 지원규모** : 총 1,100개사
- 지원대상** :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(B2C) 상품
  - \* 과거에 상세페이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** : 178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
1,780,000	1,602,000	178,000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**지원내용**

- **(진단 및 컨설팅)**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,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, 개선 방향을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
  - 대면 또는 비대면 진단·컨설팅 1회 이상 실시
- **(상세페이지 제작)** 상품명, 용도, 특징점, 사용방법, 제품크기, 판매가, 특허, 지식재산권, 기술력 및 원산지 등의 상세페이지 내용 구성
  - 타 상세페이지 제작물과의 독창성 및 차별화 등 표현
  - 인트로, 상품 포인트, 공통설명, 상세설명, 세부스펙, 필수 정보제공 고시 등 포함 구성
  - 사진촬영(썸네일, 누끼컷, 연출컷 등) 15컷 이상, GIF(1개이상) 지원
    - \* 단, 모델컷(초상권 자료 제작 지원 제외)
- **(A/S 지원)** 디자인 결과물 제공 후에도 원본 파일 제공 등 최대 3개월간 A/S 지원\*하여 소상공인 만족도 제고
  - \*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
○ **(AI 활용)** 소상공인이 직접 AI 활용 사진 및 상세페이지 제작·편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-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사진 이미지 변경 및 상세페이지 제작·편집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성형AI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및 온·오프라인 실습 프로그램 운영

- 생성형 AI 이용권은 소상공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개월수 차등 제공 (이용권 한도 18만원)

\* 수행기관별 AI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수행기관 선택 요망

□ **평가 항목**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최대 35점)	온라인판매(스마트스토어, 입점몰 등), 및 홍보마케팅 활용 적합성	35~ 31	30~ 26	25~ 21	20~ 16	15
상품 경쟁력 (최대 30점)	흥미 유발 요소, 심의 적합, 트렌드 등 상품에 대한 디자인 구현 적합성, 경쟁력	30~ 27	26~ 23	22 ~19	18 ~15	14
사업 참여 역량 (최대 20점)	상품 정보(상세설명, 상품특징 등) 완결성, 사업 필요성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발전 가능성 (최대 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최대 5점)	우대사항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\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㉓ **콘텐츠 제작**

□ **세부사업명** : 콘텐츠 제작

□ **사업목적** : 소상공인 상품에 적합한 홍보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·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과 자생력 강화

□ **지원규모** : 총 700개사

□ **지원대상** :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소상공인

\* 과거에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

□ **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** : 261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	부가가치세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□ **지원내용**

○ **(소구조사)** 다양한 영상 샘플을 제시하고, 참여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영상 콘셉트, 문구 등을 파악하여 영상 기획안 제작

○ **(콘텐츠 제작)**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

- 참여 소상공인과 협의한 기획안을 기반으로 촬영하며, 기획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요청 가능

○ **(패키지 제공)** 홍보영상 촬영본을 기반으로 이미지컷, GIF, 클린본, 매체별 최적화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콘텐츠 패키지 제공

○ **(A/S 지원)** 최종 영상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간 A/S 지원

\* 원본파일 제공 / 해상도, 사이즈, 폰트,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/S 지원

- **(실습 프로그램)** 동영상 생성형 AI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콘텐츠 제작 실습 프로그램 운영
  - 오프라인 진행, 실습 프로그램 운영 일자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녹화본 등 공유 예정
- **(AI 구독권)** 동영상 생성 AI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
  -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상품 홍보영상 제작·편집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성형AI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및 온·오프라인 실습 프로그램 운영
  - \* 수행기관에 따라 지원 AI 프로그램 유형, 제공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행기관별 지원 내용을 확인 후 선택 요망(이용권 한도 26.1만원 상당)

**평가 항목**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최대 35점)	온라인판매(스마트스토어, 입점물 등), SNS 채널 등 보유 및 콘텐츠 활용 적합성	35~31	30~26	25~21	20~16	15
상품 경쟁력 (최대 30점)	흥미 유발 요소, 심의 적합, 트렌드 등 상품에 대한 콘텐츠 구현 적합성, 경쟁력	30~27	26~23	22~19	18~15	14
사업 참여 역량 (최대 20점)	상품 설명 작성 충실 등 참여 의지 및 적극성	20~18	17~15	14~12	11~9	8
발전 가능성 (최대 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~13	12~10	9~7	6~4	3
가점 (최대 5점)	우대사항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\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**④-1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온라인쇼핑몰)**

- 세부사업명** :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온라인쇼핑몰)
- 사업목적** : 온라인쇼핑몰 내 단독딜 및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시장 정착 및 매출 활성화 지원
- 지원규모** : 총 2,457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** : 없음
- 참여 수행기관** : 15개사

구 분	수행기관	지원 카테고리	구 분	수행기관	지원 카테고리
1	11번가	전 체	9	SSG	식 품
2	G마켓	전 체	10	우체국쇼핑	식 품
3	롯데온	전 체	11	오아시스	식 품
4	그립	전 체	12	페이타랩	식 품
5	H몰	전 체	13	지그재그	패션(의류)
6	현대이지웰	전 체	14	네이버	전 체
7	SK스토아	전 체	15	W컨셉	뷰티, 리빙
8	NS몰	전 체			

\* 해당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어도 플랫폼별 지원 가능 카테고리에 따라 매칭 및 지원 불가할 수 있음

**지원내용**

- **(단독딜 지원)** 소상공인-온라인쇼핑몰 간 1대1 매칭 후, 쇼핑몰 내 단독딜 구좌에 소상공인 제품 노출 지원
  - \* 지원사업 신청시 희망 플랫폼(1~3지망) 제출하며, 입점된 플랫폼으로 매칭 및 단독딜 운영
- **(소상공인 전용기획전 운영)** 온라인쇼핑몰 내 소상공인 제품만을 노출시키는 기획전을 개설·운영하여 소상공인 제품 노출 확대

- (특화지원) 플랫폼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안착 및 매출 확대를 위한 특화지원 운영

\* 온-오프라인 교육, 판매 수수료 인하 등 수행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중복지원 제한

- 유사지원 내용 중복수혜 제한을 위해 '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선정기업 확정 이후 해당 소상공인 지원 중단

\* 단, TOPS에 참여 중인 플랫폼이 상이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지속 지원

- 동일 사업 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'온라인쇼핑몰 ↔ 로컬상품관'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능

<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지원 예시 >



□ 평가 항목

평가항목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시장 경쟁력 (25점)	시장현황에 따른 제품경쟁력	13	11	9	7	5
	마케팅 역량	12	10	8	6	4
상품 경쟁력 (25점)	보유기술의 차별성	13	11	9	7	5
	디자인 경쟁력	12	10	8	6	4
상품 구성 (25점)	제품사용에 실용적 구성여부	25	21	17	13	9
가격 적정성 (25점)	유사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\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  
(우선순위 : 상품경쟁력 > 시장경쟁력 > 상품구성 > 가격적정성)

④-2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로컬상품관 입점 지원)

- 세부사업명 :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(로컬상품관 입점 지원)
- 사업목적 :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 상품의 지역물 입점 및 상품 판매, 마케팅 지원
- 지원규모 : 총 473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없음
- 참여 수행기관 : 5개사

구분	플랫폼명	해당 지역	구분	플랫폼명	해당 지역
1	강원더몰	강원도	4	남도장터	전라남도
2	전북생생장터	전라북도	5	사이소	경상북도
3	농사랑몰	충청남도			

\*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플랫폼별 입점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

□ 지원내용

- (로컬상품관 운영) 지역물 내 로컬상품관 개설 및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지원
  - (구매상담회) 지자체물·민간 플랫폼 MD와 지역 소상공인을 매칭하여 구매상담회 개최 및 지원
- \* '온라인쇼핑몰'과 중복 신청·지원 불가능,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원산지 일치 지자체물만 신청·지원 가능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지역 연관성(25점)	지역 내 주요 사업장 운영여부	13	11	9	7	5
	지역 대표 상품 가능성	12	10	8	6	4
상품 차별성(25점)	상품의 독창성	13	11	9	7	5
	상품의 품질	12	10	8	6	4
상품 시장성(25점)	상품의 시장지배 가능성	25	21	17	13	9
발전 가능성(25점)	지원사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	25	21	17	13	9
가점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\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  
(우선순위 : 지역연관성 > 상품차별성 > 상품시장성 > 발전가능성)

**㉔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**

- 세부사업명 :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
- 사업목적 :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, 판매 전 과정 지원
- 지원대상 : 소상공인
- 지원규모 : 총 680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389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자부담금(10%)		부가가치세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	
3,890,000	3,501,000	389,000	389,000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- 지원내용 :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, 판매 전 과정 지원
  - (방송 기획)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(쇼호스트 섭외 등)
  - (방송 송출)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및 판매(방송제작, 촬영 등)
  - (연계 지원) 라이브 방송(상품) 기획전, 숏폼 등 연계 지원
- 참여 플랫폼사 : 그립, 현대홈쇼핑, 우체국쇼핑, SK스토아, NS홈쇼핑, 오아시스, 공영홈쇼핑, 지마켓, 롯데ON

\* 참여 희망 플랫폼을 선택하여 신청

\*\* 플랫폼사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

**□ 평가 항목**

세부평가지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사업 적합성 (25점)	라이브커머스 사업 목적의 부합성, 제품의 적합성 등	25	21	17	13	9
제품 경쟁력 (25점)	상품의 인지도, 품질의 우수함 등	25	21	17	13	9
가격 적정성 (25점)	제품의 주요 소구점 및 잠재력, 라이브커머스 시장 가격 대비 등	25	21	17	13	9
온라인 역량 (25점)	바이럴 역량, 온라인 마케팅 경험 등	25	21	17	13	9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점				

\* 동점자 처리기준 :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  
(우선순위 : 사업적합성 > 제품경쟁력 > 가격적정성 > 온라인역량)

**※ 기타 유의사항**

- 최종 선정된 플랫폼 및 상품 변경 불가

## ⑥ SNS 마케팅

- 세부사업명 : SNS 마케팅
- 사업목적 : SNS 타겟 광고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소셜 플랫폼 판로 확장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
- 지원규모 : 총 130개사
-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75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
2,750,000	2,475,000	275,000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### 지원내용

- **(진단·컨설팅)** 업종 및 판매 제품을 기반으로 타겟고객 등을 분석하여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1:1 컨설팅 지원
  - \* SNS 광고 채널은 메타(META)의 보유 SNS서비스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를 통해 진행
- **(타겟광고 지원)** SNS 채널에서 소상공인 계정\*으로 영상 또는 이미지 소재에 대해 타겟 광고 지원
  - \* 지원사업 관련 전용 광고계정 및 지원광고비 한도(160만원 내외)로 광고대행 지원
  - \* 소상공인이 보유한 SNS 계정으로 위탁 광고 진행을 위해 계정권한 제공 동의 필요
  - (광고소재) 광고 소재(영상, 이미지 등)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
- **(분석보고서)** 타겟 광고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분석 보고서 제공
  - \* 제공되는 보고서 양식 및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**(사후 코칭)** 참여업체 대상 AI 구독권(50,000원이내) 제공 및 마케팅 코칭 교육(1일) 제공
  - \* AI 활용 마케팅 코칭, 프롬프팅 노하우 등 코칭 제공

##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사업 적합성 (35점)	사업 지원 동기 및 참여 의지, 콘텐츠 보유 수준 등 사업 적합성	35 ~31	30 ~26	25 ~21	20 ~16	15
상품 및 브랜드 경쟁력 (30점)	타사 대비 차별화 소구점, 시장성, 흥미 유발 요소 등 경쟁력	30 ~27	26 ~23	22 ~19	18 ~15	14
판매 최적화 역량 (20점)	판매 사이트 구축 완성도, 상세페이지 최적화 등 역량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성장 가능성 (15점)	마케팅 지원을 통한 SNS광고 운영 및 매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\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## 7 온라인 홍보

□ 세부사업명 : 온라인 홍보

□ 사업목적 : 소상공인 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지원

□ 지원규모 : 총 130개사

□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75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
2,750,000	2,475,000	275,000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□ 지원내용

○ (기초 컨설팅) 업종 및 보유제품을 기반으로 타겟고객 등을 분석하여 광고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대일 컨설팅 지원

○ (광고 지원) 네이버, 카카오 등 포탈 광고(검색·배너·플레이스)지원

\* 지원사업 관련 전용 광고계정 및 지원광고비 한도(160만원 내외)로 광고대행 지원

- 검색 광고 : 키워드 검색 시, 상단 노출되는 광고(파워링크 광고 등)

- 배너 광고 : 모바일 앱 및 메신저(카카오톡 등)에서 타겟 고객층에게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

- 플레이스 광고 : 플레이스, 카카오맵 등 상단 노출 광고

<지원광고 유형>

구분	검색 광고	배너 광고	플레이스 광고
적용 예시			
노출 방식	상품군 키워드 검색 시 노출	관심 타겟층에 배너 노출	지역+업종 검색 시 노출

○ (코칭 지원) 온·오프라인 홍보 코칭(1일) 제공을 통해 홍보역량 향상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지원

○ (성과 분석) 광고지원 과정 중 대쉬보드(현황판) 제공 및 광고집행 완료 후 개별 소상공인 대상 광고 보고서 제공

- 광고집행 후, 대쉬보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제공

\* 제공되는 보고서 양식 및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필요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사업 적합성 (35점)	온라인 內 판매상품 및 매장등록 여부 퍼포먼스 마케팅 지원 적합성	35 ~31	30 ~26	25 ~21	20 ~16	15
상품 경쟁력 (30점)	보유상품 및 매장의 온라인 홍보 경쟁력 (시장성, 차별성, 가격 적정성 등)	30 ~27	26 ~23	22 ~19	18 ~15	14
사업참여 역량 (20점)	온라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산계획 및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성장 가능성 (15점)	온라인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최대 5점				

\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※ 기타 유의사항

- (광고계정 운영)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은 매체(네이버, 카카오 등) 內 ① 지원사업 전용 광고 계정\* 신규 개설 필수, ② 광고대행을 위해 수행기관에게 권한 부여 필수, ③ 광고비의 정산 및 실적 관리를 위한 사항 동의 등 필수

\* 지원사업 전용 광고계정 신규개설 및 위탁광고 진행을 위해 계정권한 제공 등의 필요

### ⑧ 물류 서비스

□ 세부사업명 : 물류 서비스

□ 사업목적 : 소상공인 물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

□ 지원규모 : 총 140개사

□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20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
	정부보조금(90%)	자부담금(10%)
2,200,000	1,980,000	220,000

\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□ 지원내용

※ 수행기관별 보유 인프라에 따라 세부 지원 범위가 상이하므로, 상세 내용은 수행기관별 서비스 소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판판대로 온라인 공고에서 확인 가능

○ (물류지원) 수행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입고, 보관, 포장, 배송, 반품 등 물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

#### < 물류 지원 프로세스 안내 >

##### · 풀필먼트(Fulfillment)란?

- 판매자가 상품을 물류센터에 입고하면, 주문 접수부터 포장, 배송, 반품 등 물류 전 과정을 전문기관이 일괄 대행하는 원스톱 물류 솔루션입니다.

\* (예시) 참여 소상공인의 상품을 수행기관 물류센터에 입고하면, 이후의 물류 업무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합니다. 입고된 상품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며, 주문 발생 시 수행기관에서 포장 및 배송까지 지원합니다.



- (입·출고) 주문 정보 연동을 통한 상품 출고 및 상시 입고 지원
- (재고관리)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을 통한 재고 현황 확인
- (포장·배송) 시스템 연동 주문 건에 대하여 상품 포장 및 배송 지원
  - \* 택배박스, 친환경 포장재, 테이프 등 상품 포장에 필요한 부자재 지원
  - \*\* 방문수거, 내일·새벽·당일배송 등 수행기관별 특화 배송 서비스 제공
- (배송CS) 배송, 오배송, 반품·교환 등 관련 고객 문의 응대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35점)	물류 시스템 적합성 (크기, 무게, 보관 등)	35~31	30~26	25~21	20~16	15
상품 경쟁력 (30점)	상품 대중성(물동량 등), 가격, 디자인 등	30~27	26~23	22~19	18~15	14
사업 참여 역량 (20점)	상품 기술 완결성,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~18	17~15	14~12	11~9	8
성장 가능성 (15점)	온라인 판매 경험 및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~13	12~10	9~7	6~4	3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				

\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

#### ※ 기타 유의사항

- 선정 후, 입고일로부터 90일간 물류서비스 지원
  - \* 단, 선정 후 지원 2개월(D+60일) 시점, 물류비 70% 이상 소진 시 지원 기간 연장 가능
- 지원 예산 소진 이후 발생하는 물류 비용은 본 사업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며, 참여기업과 수행기관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하여야 함

<붙임2>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

**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업종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증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용자 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